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6 - 8호

2006년도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

지난, 5. 15(월) 공고한 소방관련학과 졸업생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종전 157명에서 155명 (충북: 소방관련학과 졸업생 1명, 의무소방원 전역자 1명)으로 변경 공고합니다.

2006년 5월 17일

중앙소방학교장

1. 임용예정계급: 지방소방사

2. 선발예정인원 : 총 155명 (단위 : 명)

구	분	<u>-</u>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전북	경북	경남
	계		155	12	8	5	13	7	6	4	40	5	2	23	10	20
소방 관련 작 절업 생	소방 학과 등	남	53	5	2	1	-	3	2	2	14	-	1	6	7	10
		여	2	-	_	1	_	-	_	_	1	_	_	-	_	_
	응급 구조 학과	남	35	3	3	1	7	2	2	-	4	-	-	13	_	_
		여	5	2	_	1	_	-	_	-	1	-	1	1	_	-
의 두 전 ⁹	의무소방원 전역자(남)		60	2	3	1	6	2	2	2	20	5	1	3	3	10

3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기 간 : 2006. 5. 22(월) ~ 5. 26(금), 평일 09:00~18:00

나. 장 소 : 중앙소방학교 및 해당 응시지역의 시·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

- 응시원서는 중앙소방학교 및 시·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가능

※ 2개 시·도 중복응시는 불가하며, 우편접수시에는 2006. 5. 26 (금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, 받는 사람 주소, 성 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동 봉하여야 합니다.

4. 시험방법

가. 제1차시험: 서류전형

○ 전형방법 : 법정자격 요건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

나. 제2차시험 : 필기시험

○ 시험일시 : 2006. 6. 17(토) 11:00~12:15(75분)

○ 시험장소 :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(충남 천안시 안서동 소재)

○ 시험과목 : 국어, 국사,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

다. 제3차시험: 실기시험

○ 시험일시 : 2006. 6. 29(목) 09:00

○ 시험장소 : 오룡경기장(충남 천안시 원성동 소재)

○ 시험종목 : 1,200m달리기, 50m달리기, 제자리멀리뛰기, 팔굽혀

펴기, 윗몸일으키기

○ 시험기준 :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

실기시험 시행기준(소방방재청 예규 제4호)

○ 합격기준 : 매 종목 2점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

득점한 경우 합격

라. 제4차시험 : 신체검사

○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시・도 소방본부에 7. 7(금)까지 제출

○ 시・도 소방본부 : 중앙소방학교(서무계)에 7. 10(월)까지 제출

○ 응시자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서면검정 : 2006. 7. 11(화)

※ 제출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기한이 없는 관계로 응시자는 소방공무원채용신체조건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

마. 제5차시험: 면접시험

○ 일시/장소 : 2006. 7. 14(금) 10:00 / 중앙소방학교

5. 합격자 발표

시 험 구 분	발 표 일 시	발 표 장 소 및 방 법
서류전형	2006. 6. 2(금) 10:00	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

필기시험	2006. 6. 23(금) 10:00	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
실기시험	2006. 6. 30(금) 14:00	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
신체검사	2006. 7. 12(수) 14:00	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
최종 합격자 발표	2006. 7. 20(목) 10:00	소방방재청 및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

6. 응시자격

- 가. 연 령: 20세이상 30세이하('75.1.1~'86.12.31 사이에 출생한 자)
 - ※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(행정관서요원)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(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),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 - →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, 1년이상~2년미만은 2세, 2년이상은 3세 연장 (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)
- 나.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)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다. 병 역 (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)
 -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, 면접시험 최종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
- 라. 학 력(소방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)
 -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(소방학과 포함) 졸업자 및 2년제(전문)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
 - 2년제(전문)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

마. 자격제한

-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
 -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시 면 허증(원본)을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, 면허증 사본(식별이 가능 할 것)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-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(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) 바. 거주지 제한(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)
 - 의무소방원 전역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공고일 현재,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(시·도)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자
- 사.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[별표5]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한 자
- ※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(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)

부분별	남여별	남 자	여 자
체	격	체격이 강건하고 팔·다리가 완전하며,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.	같 음
신	장	165cm 이상이어야 한다.	154cm 이상이어야 한다.
체	중	57kg 이상이어야 한다.	48kg 이상이어야 한다.
ਲੁੱ	위	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	같 음
시	력	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.3 이상이어야 한다.	같 음
색	신	색각이상(색맹 또는 색약)이 아니어야 한다.	같 음
청	력	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.	같 음
현	아	고혈압(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) 또는 저혈압(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)이 아닐 것	같 음
운동	신경	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 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.	같 음
용	모	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야 한다.	같 음

7.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 1통(소정양식, 칼라사진 3cm × 4cm 2m, 정부 수입인지 5,000원 상당)
- 나.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(병적확인용)

- 다.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(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)
- 라.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(소방학과 포함), 2 년제(전문)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증명서 1통(인터넷발급용은 칼라출력물 제출)
- 마.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(국가보훈처장 발행, 해당자에 한함)
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,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
 -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
- 바.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통(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)
- 사.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(식별이 가능할 것)
- ※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(시·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「의료법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된 것에 한하며, 실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출
 - → 시·도별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실기시험 장소(오룡경기장)에서 당일 공고: 신체검사서는 2006. 7. 7일까지 응시 시·도 소방본부로 제출

8. 기타사항

- 가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나. 태풍, 폭우 등으로 인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,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은 사후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- 다.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, 착오·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- 라. 시험응시자는 필기시험 당일 시험응시표, 신분증 및 필기구(컴퓨 터용 수성사인펜)를 지참하여 주시고,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 또는 시·도별 접수 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본 공고문의 내용은 소방방재청 또는 시·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※ 문의처 : 중앙소방학교 서무과 서무계(041-550-0952)

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혐의 실기시험방법 및 합격기준표

1. 체력기준

종 목	구분	4점	3점	2점	1점	0점
1,200m	남	282이하	283~314	315~366	367~412	413이상
달리기(초)	여	379이하	380~423	424~483	484~528	529이상
50m	남	6.7초이하	6.8~7.1	7.2~7.7	7.8~8.7	8.8이상
달리기(초)	여	8.2초이하	8.3~8.9	9.0~10.2	10.3~11.2	11.3이상
제자리	남	250이상	249~237	236~215	214~201	200이하
멀리뛰기(cm)	여	188이상	187~172	171~153	152~136	135이하
팔굽혀펴기	남	50회이상	35~49	34~25	24~17	16이하
(회)	여	40회이상	27~39	15~26	10~14	9이하
윗몸일으키기	남	53회이상	43~52	33~42	26~32	25이하
(회)	여	41회이상	34~40	21~33	13~20	12이하

(측정방법)

- 가. 1,200m 달리기 :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 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.
- 나. 50m 달리기 :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.
- 다. 제자리 멀리뛰기: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,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,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. (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가능)

- 라. 팔굽혀 퍼기: 남녀모두 2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,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, 어깨, 허리, 엉덩이, 다리 등이 일 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. 여자는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업 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, 이때 머리, 어깨, 허리,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,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.
- 마. 윗몸일으키기: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°이상 일으킨다.
- 바.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,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. (단,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.)